의 아 버 호

1542

[울산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]

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. 4. 18.(목), 문희성 의원 외 10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5. 3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5. 20.(월)

2. 제정이유

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의 발굴・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 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 하여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재단설립 및 사업, 장학생 선발 등(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)
- 나. 재산 조성, 정관, 이사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)
- 다. 사업계획서, 재정지원, 공무원 파견 등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- 라. 재단에 대한 제재, 검사 · 보고 등(안 제14조 및 제15조)

4. 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법」제9조제2항제2호 및 「민법」제32조

5. 검토의견

- O 본 제정 조례안은 장학재단을 설립·운영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 치법 |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에 대한 자치사무이며,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- O 다만,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와 시와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되므로 부칙에 조례의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근 거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